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안전관리 강화〉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61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안전관리 강화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종덕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6. 25.
3. 회 부 일 : 2025.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실습은 학칙에 따라 6주 이내의 단기 현장실습과 8개월의 장기 현장실습으로 운영됨.

그런데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매년 현장실습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2022년에 이어 2025년에 또다시 발생하였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 다.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 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진행 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 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안전관리 강화

가. 개요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협약 체결, 보험 가입, 안전교육, 안전점검, 실태조사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

개정안 중 안 제6조의2(현장실습 협약)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장의 대표 및 참여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체결 및 이행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3(현장실습 학생의 보호)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현장실습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실습장 대표에게도 산재보험 가입 및 농기계 안전점검, 보호장비 지급, 휴식시간 보장 등 사고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4(현장실습 실태조사)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협약 이행 등 현장실습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현장실습 협약)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이하 “실습장 대표”라 한다)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현장실습 학생”이라 한다)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실습장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이행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의3(현장실습 학생의 보호)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학생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실습장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습장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습장 대표는 현장실습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실시 전 농기계 등 관련 설비의 안전점검 2.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지급 3. 현장실습 학생의 과로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그 밖에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현행	개정안
<신설>	<u>으로 정하는 사항</u> 제6조의4(현장실습 실태조사)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실습장의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시기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7년 개교¹⁾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는 전문 농어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립된 3년제 국립대학으로,²⁾ 작물·산림, 원예, 축산, 농수산융합 등 4개 학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야간·계절·사이버 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음.³⁾

이 중 현장실습은 학칙 및 이에 근거한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⁴⁾에

-
- 1) 설립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하여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2021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음.
- 2) 2010년부터 전공심화과정이 신설되어 4년제 대학교와 같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
-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6조(교과 및 수업)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열·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평점은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4)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제35조(교육과정) ④ 현장실습은 국내·국외의 선진농장·어장 또는

따라 2학년 교육과정으로서 국내외의 선진 농어업경영체에서 경영주의 지도를 받아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 6월 기준 200개 실습장에 41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현장실습 운영 현황(2025.6.기준)]

학부	전공	실습장	실습인원
작물산림학부	식량작물	16	32
	특용작물	16	25
	버섯	12	19
	산림	10	15
	조경	4	15
원예학부	채소	17	42
	원예환경시스템	14	36
	과수	15	32
	화훼	5	18
축산학부	한우	18	38
	낙농	7	14
	양돈	10	16
	가금	11	14
	말산업반려동물	8	16
농수산융합학부	산업곤충	5	13
	농수산푸드테크	8	25
	농수산비즈니스	9	22
	수산양식	15	21
합계(4개 학부, 18전공)		200	41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서 영농·영어를 체험하면서 부과된 과제를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1. 현장실습은 단기 현장실습과 장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2. 단기 현장실습은 6주 이내로 하고, 장기현장실습은 8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2조(장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은 2학년 교육과정으로서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 농어업경영체에서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생의 현장실습과정 중 22건의 부상 사고와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2025년 5월에는 경남 합천군 양돈장에서 장기현장실습 중이던 한농대 재학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⁵⁾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생 안전사고 현황]

연도 (건수)	연번	성명	학부	실습장명	시도	재해정도	재해·부상 내용
2021년 (8건)	1	고○○	원예	○○○	전북	부상	발목 부상
	2	김○○	작물산림	○○○	강원	부상	손가락 부상
	3	박○○	작물산림	○○○	전북	부상	인후염
	4	추○○	원예	○○○	충북	부상	갈비뼈 부상
	5	이○○	원예	○○○	경기	부상	손가락 부상
	6	권○○	축산	○○○	전북	부상	무릎 연골 파열
	7	김○○	축산	○○○	전남	부상	팔 골절
	8	김○○	원예	○○○	충남	부상	발 근막염
2022년 (7건)	9	최○○	축산	○○○	경기	부상	발 피부봉합
	10	박○○	농수산융합	○○○	충북	부상	정강이 부상
	11	이○○	원예	○○○	경기	부상	발목 접질림
	12	박○○	축산	○○○	전남	부상	허리 부상
	13	오○○	축산	○○○	경북	부상	팔, 가슴에 타박상
	14	성○○	원예	○○○	전남	부상	손가락 부상
	15	안○○	원예	○○○	경기	사망	사망
2023년 (4건)	16	안○○	축산	○○○	전북	부상	귀 부상
	17	왕○○	축산	○○○	충북	부상	어깨 통증
	18	정○○	작물산림	○○○	경남	부상	손가락 베임
	19	유○○	축산	○○○	전북	부상	팔 골절

5) 축산경제신문, “실습 중 참사... 한농대 또 사망 사고”, 2025-05-23

연도 (건수)	연번	성명	학부	실습장명	시도	재해정도	재해·부상 내용
2024년 (4건)	20	윤○○	축산	○○○	전남	부상	발가락 골절
	21	강○○	원예	○○○	전북	부상	화상
	22	이○○	축산	○○○	경기	부상	팔 골절
	23	곽○○	원예	○○○	경기	부상	다리 골절
2025년 (1건)	24	김○○	축산	○○○	경남	사망	사망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현장실습 협약(안 제6조의2제1항·제2항), 보험가입,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안 제6조의3), 실태조사(안 제6조의4)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협약 이행 결과의 국회 보고(안 제6조의2제3항)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현장실습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나. 규정의 법률 상향

먼저, 개정안은 현행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 실습장 대표 및 실습생에게 부과되는 권리·의무의 실질적 내용에 큰 변동은 없음.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농대 총장,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은 실습기간, 휴가 등 복리후생, 숙식, 실습수당 등 장기현장실습과 관련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장기현장실습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⁶⁾ 총장은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며, 실습장 대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⁷⁾에 가입하여야 함.⁸⁾

[산재보험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구분	산재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보장 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간병급여금, 휴업(입원)급여금, 재활(고도장해)급여금, 재활(재해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

- 6)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9조(장기현장실습협정의 체결) ① 실습장의 대표와 실습생 및 총장은 장기현장실습과 관련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장기현장실습협정을 체결한다. 다만, 실습장의 대표는 협정체결의 권한을 현장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교수는 실습장을 대표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기현장실습협정서(이하‘협정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실습기간
 2. 휴일, 휴가 및 복리후생
 3. 현장교수 및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4. 숙식, 실습수당, 실습용품
 5.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협정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현장교수와 실습생 및 본 대학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협정서의 내용은 현장교수와 실습생 및 본 대학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⑤ 협정서는 협정서상의 기간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 7) 농어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8)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35조(손해보상보험 가입) 총장은 실습 중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장 신청서
 * 산재보험 미가입시,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을 가입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장·현장교수 평가표
 * 산재보험 미가입시 실습생 배치후 15일 이내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 가입을 확약함

구분	산재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보험기간	사업 시작일 ~ 사업 폐업 또는 끝난 날	1년 만기(일시납)	1년 만기(일시납)
보험료 (산재형)	650,040원 / 연간	181,900원 / 연간	(산재1형) 266,300원 / 연간 (산재2형) 331,300원 / 연간
보험료 지원	-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피보험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자체별 지원비율(0~50%) 다름
운영사	근로복지공단	NH농협생명	수협중앙회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총장은 현장실습 전 안전교육 및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교수는 농기계 안전점검, 보호구 지급, 휴식 제공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⁹⁾

아울러 학부장¹⁰⁾으로 하여금 현장방문을 통해 협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¹⁾

9)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34조(안전조치) ① 총장은 제22조의 실습생 및 현장교수 사전교육에 실습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실습생이 실습 중인 실습장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교수는 총장이 개설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실습 중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농기계, 기구, 장치 및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 실시
2. 실습 중 안전보호구 착용
3. 실습장 내 구급약품 및 소화기 비치
4. 실습생의 과로방지 및 적절한 휴식 제공
5. 그 밖에 총장이 요구하는 안전 조치 관련 사항

④ 실습생은 안전관리 교과목 등 총장이 개설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교수가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제6조(학부) ② 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부의 교무를 총괄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25조의2(대학의 실습지도) 학부장은 현장 방문, 전화, 현장교수 연찬회, 실습생 소집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그러나 학칙과 내규는 대학 내부 자치규범으로 강제력 및 학교 외부에 대한 규범력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실습장 대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은 대학의 설치(제2조), 교육과정(제6조), 교직원(제7조), 학비 지원(제9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¹²⁾

유사 입법례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22조¹³⁾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 근거하여 학칙 등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타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도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1. 실습일지 및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2. 장기현장실습 협정서 준수
 3. 실습생의 실습 중 준수사항
 4. 현장교수의 실습지도 상황
 5. 실습장의 복리후생 실태
 6. 그 밖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 12)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의견
- 13)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9조(학교별 규정)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이 고시에 근거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학칙만으로 충분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고, 특히 학내 구성원이 아닌 실습장 대표 등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학생 안전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농대 및 타 대학 현장실습 관련 규정 비교]

구분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교 설립근거법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국립학교 설치령
현장실습 근거		법 제6조 (교과 및 수업)	학칙 제35조 (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시행령 제16조 (학비보조 등)
현장실습 주요 내용		곡물, 화훼, 가축 등 농수축산물 생산 및 관리 방법 등	실습생 전공과 관련된 전통문화 기관에 실무 실습과정 학습	승선실습
현장실습 운영	규정명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자체규정)	현장실습 운영지침 (자체 규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규정(자체 규정)
	현장실습 기간	8개월	학기제(15주) 계절제(4주, 7주)	4주~15주
	보험	제35조(손해보상보험 가입)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 제6조(보험) 상해 보험 및 산재보험	• 제15조(협약체결) 상해 보험 가입
	안전관리 조항 및 내용			
	실습생 의무 관련	• 제19조(실습생 준수사항) 안전수칙 준수	• 제15조(실습생 의무)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 제17조(현장실습생의 의무)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실습기관 관련	• 제34조(안전조치) 안전교육 이수, 사고예방 조치	• 제13조(실습기관)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협약 관련	• 제9조(장기현장실습협정 체결)	• 제14조(협약사항)	• 제15조(협약체결) • 제16조(협약사항)
	교수의 지도 점검	• 제25조의2(대학의 현장지도) 학부장의 이행 실태 점검·지도	• 제11조(실습 지도) 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점검 및 방문지도 보고서 작성	• 제12조(현장실습 지도) 지도교수의 현장교육 점검 및 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 작성

※ 자료: 관련 법령 재구성

다. 협약 이행 결과 국회 보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에서는 실습장이 협정서를 위반한 경우 총장이 실습장 선정¹⁴⁾을 취소하거나 현장교수¹⁵⁾를 해촉하는 방식으로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¹⁶⁾

[최근 3년간 한농대 실습장 선정 취소 현황]

연도	전공	실습장
2024	가금전공	계000
	조경전공	000식물원
2025	산업곤충	비00000
	원예환경시스템	00연구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6조의2제3항은 이러한 현행 규정의 협약 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 장치와 별도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협약 체결 및 이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 협약을 통한 실습생 안전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14) 실습장 선정은 농수산물 생산되는 경영체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 중 장기현장실습장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가 한농대 총장에게 운영계획서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교수 면접 및 실습장 현장방문 실사 등을 거쳐 장기현장실습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됨.

15) 현장교수: 장기현장실습장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자

16)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11조(실습장 선정 및 취소) ⑤ 총장은 선정된 실습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실습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34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본 규정 또는 협정서를 위반한 경우

다만, 이러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은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해 사안이 국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할만큼 주요한 정책적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발생빈도나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